수석부회장선출 규정

<2016. 9. 7. 제정>
<2017.07.12. 개정>
<2023.01.01. 개정>

제1조(총칙) 본 세칙은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관위는 당해년도 회장 및 수석부회장과 기획위원에서 2인을 선출하여 선관위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선관위원장은 당해 연도 본 학회 회장이 맡는다.

제3조(후보자 추천)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입후보 한다.

1.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이다.
2. 학회 이사 및 위원회 위원 3인의 추천받은 자가 후보자가 된다.
3. 추천기간은 10일 내외로 하며 학회회원에 사전에 공지한다.
4. 선관위는 3인 이상 추천받은 자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당자사에게 통보한다.
5. 통보 1주일 후 사퇴자를 제외한 후보자를 확정하여 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선거운동) 선관위에서는 후보자 공고 시 이력서와 선거공약을 전 선거인단에게 일정기간(온라인), 일정횟수(이메일) 공지한다.

제5조(투표권) 투표권은 당해년도 평의원에 위원에게 부여한다.<개정 2023.09.13.>

제6조(투표) 수석부회장 선거는 온라인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1.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서면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2. 투표기간은 10일 내외로 하며 투표권자에 사전에 공지한다.
3.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하며, 단일 후보인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제7조(개표 및 당선자 결정)

1. 개표는 투표 완료 후 즉시 실시한다.
2.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투표율에 관계없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만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 유효투표 과반수의 신임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3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하며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5. 당선자의 유고시 6항 이하의 절차에 따른다.
6. 선관위원장은 투표결과를 11월 이사회에서 당선자를 확정하고, 이를 총회에서 발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